

# 축산관계자 정보 현행화 및 출입국 신고 의무화 안내

출처 : 농림축산검역본부

◎ 구제역,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등 해외 악성 가축전염병의 국내 유입 방지를 위해 해외 여행 축산관계자의 방역 및 검역 관리 중요

◎ 축산관계자는 본인의 정보를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운영하는 KAHIS에 직접 등록([www.kahis.go.kr](http://www.kahis.go.kr))하여 방역·검역 정책 추진에 적극 협조 당부

\* KAHIS :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구축 운영하고 있는 국가동물방역통합시스템으로 축산관계자의 정보 등록·관리 (관련근거: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조 및 시행령 제15조의2)

◎ 아울러,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으로 축산관계자는 가축전염병 발생 국가를 여행할 경우 반드시 출국신고 및 입국신고를 하여야 함

○ '17. 6. 3일부터는 출국신고와 입국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할 경우 각각 300만원 이하와 1,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

※ 축산관계자의 범위

1. 가축의 소유자등과 그 동거가족* 소, 산양, 면양, 돼지, 닭, 사슴, 오리, 거위, 칠면조, 메추리를 사육하는 자	6. 동물약품을 판매하는 자 동물약국, 동물용의약품제조업자, 동물용의약품수입판매업자, 동물용의약품도매상 소유자와 고용된 자
2. 가축의 소유자등에게 고용된 사람과 그 동거가족* 고용계약 체결 유·무와 상관없이 가축의 소유자등에게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는 자	7. 사료를 판매하는 자 사료제조업을 등록한 소유자 및 판매업자와 고용된 자
3. 수의사 동물병원 개설자 및 고용된 자, 수의·축산 관련 공무원, 공중병역수의사, 수의학·축산학 동물자원학을 전공하는 대학의 교수·부교수·조교수·강사·대학원생, 축산관련 단체에 고용된 자, 동물원에 고용된 자, 국립생태원에 고용된 자	8. 가축분뇨를 수집·운반하는 자
4. 가축인공수정소 개설자 및 고용된 사람	9. 가축시장의 종사자 축산업협동조합이 개설 관리하는 가축시장의 종사자
5. 가축방역사 가축방역사로 위촉을 받은 자	10. 원유를 수집·운반하는 자
	11. 도축장의 종사자

\* 동거가족 : 주민등록표에 등록된 자(사실상 거소를 함께 하는 가족 포함)축산관계자 정보 KAHIS 등록 방법

◎ 축산관계자 정보 KAHIS 등록 방법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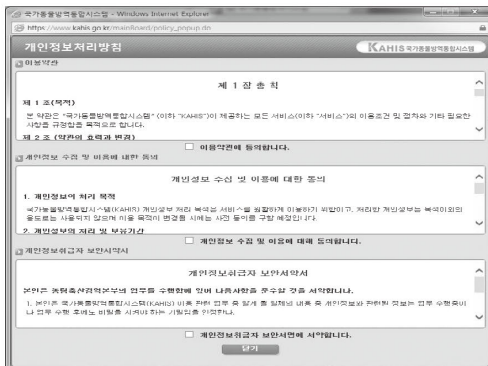
① 축산관계자 본인이 KAHIS 홈페이지  
(www.kahis.go.kr) 접속



② 홈페이지 하단의 “축산 관계자 등록” 아이콘 클릭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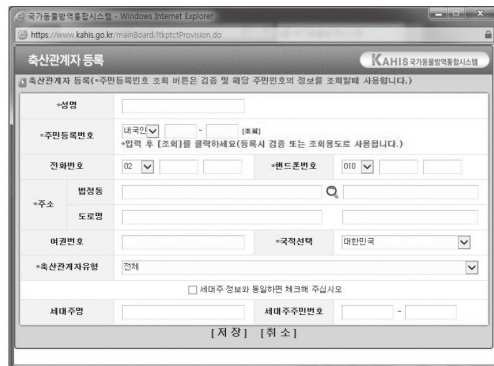


③ “개인정보처리방침” 동의



‘이용약관’, ‘개인정보 수집·이용’ 및 ‘개인정보취급자 보안 서명’의 3가지 사항 체크박스 모두 선택

④ “축산관계자 등록” 후 저장



필수선택 사항(성명, 주민번호, 핸드폰번호, 주소, 국적, 축산 관계자유형)을 모두 입력 후 저장 선택

※ 등록방법 문의 : KAHIS 상담센터 070-7510-3703

